

경쟁제한적 공동 행위 그리고 비방 광고의 경계: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소개

김 남 우*

법무법인(유) 태평양, (미국) 변호사

I. 들어가며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적인 공동 행위는 소위 경쟁법(competition law)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경쟁법 집행기관 또한 경쟁제한적인 공동 행위를 집행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공정거래원회 백서에 따르면, 담합의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⁰¹, 미국이나 유럽공동체의 경우도 자주 경쟁제한적 공동 행위에 대한 법 집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다.⁰²

사업자들 간의 공동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면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경쟁촉진적인 면과 경쟁제한적인 면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를 소위 ‘경성 공동 행위’라고 하여 엄격하게 당연 위법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후자를 ‘연성 공동 행위’라고 하여 경쟁촉진적인 면과 경쟁제한적인 면을 비교형량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경성 공동 행위는 경쟁사업자 간의 가격 또는 산출량 담합,

* 법무법인(유) 태평양, (미국) 변호사(Member of North Carolina State Bar); 법학박사(Doctor of Judicial Scienc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2010). 본 글의 모든 내용은 저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저자와 연관이 있는 어떤 기관 및 조직의 의견이나 입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⁰¹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184 (2017).

⁰² 예를 들면, 유럽공동체 경쟁당국의 전 Vice President인 Joaquin Almunia는 2014년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다. Joaquín Almunia,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sponsible for Competition Policy, Fighting against cartels: A priority for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April 201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281_en.htm (“The fight against cartels is and will remain a priorit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and for the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e EU. The odds that a cartel is detected and sanctioned can only go up.”).

입찰담합 및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다른 경쟁사업자를 보이콧 하는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연성 공동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공동 구매 또는 다양한 형태의 조인트 벤처를 들 수 있다. 즉, 최근까지 사업자 간의 공동 행위는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행위들이 주로 법 집행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결정은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공동 행위를 법 위반의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⁰³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비방적 진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한 경쟁제한적인 공동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 여부와 함께 잠재적인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Hoffman-La Roche/Novartis Case (C-179/16)

1. 유럽공동체 경쟁법 개관

유럽공동체에서 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제101조와 제102조이다. 제101조는 소위 ‘공동 행위’를 제102조는 ‘단독행위’를 규율하는데, 공동 행위는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며, 제102조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단독으로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다. 제101조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가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 생산량을 고정 또는 입찰

⁰³ 유럽공동체의 경우, 경쟁법(Treaty on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위반의 경우 제1차적인 법 위반의 판단은 European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은 General Court 그리고 상고심은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담당하고 있다.

담합을 하는 등의 담합 행위이며, 제102조 위반이 되는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 또는 자신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⁰⁴

한편, 유럽공동체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목적 위반(restriction by object)과 효과에 의한 위반(restriction by effect)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므로 그 법 위반이 추정되는 기준이며, 후자는 해당 행위가 효과가 경쟁 제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이다. TFEU 제101조는 제3항에서 목적에 의한 위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나 효과에 의한 위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 법 위반의 의심을 받는 사업자는 제10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⁰⁵

아래에서 소개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제101조 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공동 행위 사건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비방 행위를 목적에 의한 위반 행위로 제재한 경쟁 당국의 결정을 인용한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이 판결은 공동의 비방 행위를 유럽공동체 최고 법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결정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사실관계

공동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는 Roche와 Novartis라는 두 다국적 제약회사이다. 한편, Roche의 자회사인 Genetech라는 제약회사는 Avastin과 Lucentis라는 두 종류의 의약 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Avastin은 Roche와 그 자회사인 Roche Italia에 의해서 유

⁰⁴ 제101조는 경쟁(수평적)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공동 행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수직적 시장 분할 등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⁰⁵ 그러나 실제 법집행은 전자의 경우는 정당성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국 법 상 당연 위법(per se illegal)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비교형향하는 미국 법상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과 유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경쟁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전통적인 목적에 의한 위반행위가 되는 공동 행위를 가격담합, 생산량 담합 그리고 시장 분할로 규정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restrictions of competition "by object" for the purpose of defining which agreements may benefit from the De Minimis Notice (2014),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legislation/de_minimis_notice_annex.pdf ("The three classical "by object" restrictions in agreements between competitors are price fixing, output limitation and market sharing (sharing of geographical or product markets or customers).

통되는 종양 관련 치료제로 유럽공동체 마케팅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를 받은 의약품이다. 반면, Lucentis는 눈 질병 치료 약품으로 이 또한 2007년 마케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데 Novartis와 그 자회사인 Novartis Italia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었다.

그런데, 두 의약품 사이에는 실제 처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대체 관계가 있었다. Lucentis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는 딱히 눈 질병에 대한 Lucentis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약도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는 특정 눈 질병에 대해서 눈 질병에 특화된 치료약 대신 Avastin을 대신 처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Off-Label Practice(or Use)”라고 하며,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Lucentis가 유럽공동체로부터 마케팅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되어 왔는데, 이는 Avastin의 가격이 Lucentis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즉, Lucentis가 상용화 되어 시판되는 시점에는 눈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서 Lucentis가 사용되어야 했으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Avastin이 대체제로서 계속 시장에서는 처방되고 있었던 것이다.

Roche와 Novartis는 공동으로 Avastin이 Off-Label Practice를 통해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Avastin에 대한 비방적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일반 대중에 유포하였는데,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2014년 2월 27일 Roche와 Novartis가 눈 질환에 대한 Avastin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그 보다 가격이 높은 Lucentis의 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경쟁제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즉, Roche와 Novartis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⁰⁶

한편,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이 두 제약회사가 이러한 합의의 일부로서 경쟁사업자 상품 배제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과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암 치료제(이 사건에서는 Avastin)를 Off-Label Practice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 안과 질환 의약품(이 사건에서 Lucentis)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료규제기관, 의료 업계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널리 알리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즉, 안과 질환의 치료를 위한 Avastin 사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그에 반대되는 의

⁰⁶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견을 폄하하는 내용을 전달하여 유럽공동체 의약국(European Medicines Agency)으로 하여금 Avastin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보고하는 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의료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유럽공동체 의약국은 Roche와 Novartis가 요청한 허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Avastin의 Off-Label Practice와 관련된 부작용을 해당 의약품의 특징 요약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Avastin의 약품 요약을 개정하였다. 즉, 쟁점은 자신들의 의약품에 비하여 특정 의약품이 유해하다거나 특정 질환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정보가 과학적인 입증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는 않으나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는 아닌 경우, 이러한 정보의 유포나 전파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탈리아 경쟁법 상 목적에 의한 법 위반 행위로 금지해야 하는가였고,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이를 경쟁법 위반행위로 결정한 것이다.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총 9천 2백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Roche, Novartis 및 각 사의 이탈리아 자회사에게 부과하였다.⁰⁷ 이 결정은 1심 지방법원에서 다시 다투어 졌으나 해당 법원은 여전히 경쟁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시 1심 법원의 결정은 Supreme Administrative Court로 항소 되어, 해당 법원은 Roche와 Novartis의 공동 행위가 목적에 의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의를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하게 된 것이다.

3. 법원의 결정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행위가 목적에 의한 위반행위라고 결정하였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목적에 의한 위반행위라는 판단은 행위에 의한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경쟁제한성이 분명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대해 공동 행위의 참여자인 두 회사는 해당 행위가 목적에 의한 위반 행위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Avastin의 안전성에 대

⁰⁷ 이탈리아 경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결정은 지방행정법원(이탈리아 원어로는 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e per il Lazio)의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 즉, 경쟁법 위반 결정에 대한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방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고등행정법원(이탈리아 원어로는 Consiglio di Stato)에서 담당한다. 이 두 행정법원은 로마에 위치해 있다.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탈리아 대법원(이탈리아 원어로는 Corte di Cassazione)의 심리를 받게 된다.

한 진정한 우려의 표명이며 공공 보건을 위한 긍정적인 행위라고 항변하였으나 유럽사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먼저, 유럽사법재판소는 목적에 의한 위반 사례인지를 살펴볼 때,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의약품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마케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유럽 의약국, 유럽 위원회 및 회원국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보가 공공의 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약물 감시 의무는 전적으로 마케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몫이라는 점인데 이 사건에서는 Roche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 즉, 법원이 이 점을 명시한 것은 약물 감시 의무가 경쟁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 사건에서는 Novartis)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Novartis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라는 것은 과학적 확실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Avastin의 Off-Label Practice(or Use)와 관련된 의학적 위험에 대한 유럽공동체 의약국, 유럽공동체 위원회, 및 일반 대중의 인식을 혼돈스럽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소위 오인(misleading) 가능성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즉 제약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보의 유포는 의사들로 하여금 Avastin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

위에서 언급한 유럽사법재판소가 내어 놓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 두 번째 요소는 기존의 비방 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표시광고법과 달리 낮게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동 판결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라도 어떻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그 행위가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III. 생각해 볼 문제

1. 단독 행위의 경우 적용 문제

위 사건은 공동 행위로서 경쟁사업자 비방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유럽공동체 최고 법원의 판결이다. 아직 단독 행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경쟁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경쟁사업자의 비방 행위를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비방 행위를 굳이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프랑스 경쟁 당국은 2014년 요플레(Yoplait)라는 상표로 유명한 요거트 제조 사업자인 Societe Nouvelle des Yaourts de Littee (SNYL)의 경쟁사업자인 La Laiterie de Saint-Malo의 요거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만적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로 제재한 적이 있다.⁰⁸ 이 사건에서 SNYL사는 1백 6십 7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SNYL사가 경쟁사업자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의심을 제기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방법 등이 실제 적용되는 방법과 차이가 나는 등 오인할 수 있는 시험 결과를 사업자 단체 및 유통사업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하려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로서 판단된 것으로 위 판결과 달리 유포된 정보의 오인(misleading)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사건으로 생각된다.

2.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비방 표시 및 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비록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 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 광고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위법한 비방 광고로 규정하

⁰⁸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user/standard.php?id_rub=592&id_article=2699&lang=en.

고 있다.⁰⁹ 즉, 기초한 사실이 오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해당 정보가 극히 정확한 정보라면 해당 표시 및 광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오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일 경우 과연 위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경쟁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판결에서 그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방적 행위가 비방 표시, 광고의 기준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의도로 사업활동을 전개하므로 비방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없다면 설사 그 의도가 경쟁사업자의 배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방 행위를 경쟁제한행위로 포섭한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 기준이 기존의 표시광고법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위 사건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적 행위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제재한 경쟁 당국의 결정에 대해 유럽공동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단 위 사건 이외에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 중 프랑스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 당국(French Competition Authority)은 제약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4년 간 3건의 사건에서

⁰⁹ 공정거래위원회,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V. (예규 제269호).

¹⁰ 이러한 판단기준은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복제 약품의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방 공동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였다.¹¹ 즉, 유럽 공동체 및 그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비방적 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적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직접적으로 다투어 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²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법 집행이 이루어져 온 전통적인 혹은 전형적인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약산업과 같이 상당히 위험회피적인 시장의 경우에는 비방적 정보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¹³ 즉, 상당히 위험회피적인 시장이라면,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정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전달 방법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사업자들에게 법집행에 대한 확실성 또는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방적 행위가 법 위반의 정도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 및 과학적 근거의 뒷받침의 고려 정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경쟁 행위가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¹¹ 프랑스 경쟁당국은 Sanofi-Aventis (Decision 13-D-11), Schering-Plough (Decision 13-D-21), 및 Jansen-Cilag (Decision 17-D-25) 건에서 각각 4천 6십만 유로, 1천 5백 3십만 유로, 2천 5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¹²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법 위반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 Catch-all 조항을 둔 것이므로 위에서 논의한 비방적 공동행위를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¹³ 전통적인 혹은 전형적인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라 힘은 예를 들어, 공동 행위의 경우 공동의 거래거절, 단독행위의 경우 거래거절, 약탈적 가격행위 등이 있다.

참고문헌

[보도자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06/18, The agreement between the pharmaceutical groups Roche and Novartis designed to reduce the use of Avastin in ophthalmology and to increase the use of Lucentis might constitute a 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object',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8-01/cp180006en.pdf>.

[결정문] C-179/16 – F. Hoffmann-La Roche and Others,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2dc30dd3c3af371c1df4173b54ce191ce3f3a9b.e34KaxiLc3qMb40Rch0SaxyNbxn0?text=&docid=198644&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74049>.

[연설문] Joaquín Almunia,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sponsible for Competition Policy, Fighting against cartels: A priority for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April 201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281_en.htm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2017)

_____ ,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제269호)

[책] Richard Whish &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8소 ed. 2015).

[책] Alison Jones & Brenda Sufrin,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 Materials (5th ed. 2014)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restrictions of competition "by object" for the purpose of defining which agreements may benefit from the De Minimis Notice (2014),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legislation/de_minimis_notice_annex.pdf

Mario Siragusa, Matteo Beretta & Matteo Bay, Competition Law in Italy: The first 20 years of law and practice, available at <https://www.clearygottlieb.com/-/.../competition-laws-outside-the-united-states.pdf>.

[보도자료] The Autorité de la concurrence, Press Release, Yoghurts in the French West Indies (July 24, 2014),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user/standard.php?id_rub=592&id_article=2699&lang=en.

[결정문] Sanofi-Aventis (Decision 13-D-11),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pdf/avis/13d11.pdf> (French).

[결정문] Schering-Plough (Decision 13-D-21),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pdf/avis/13d21.pdf> (French).

[결정문] Janssen-Cilag (Decision 17-D-25),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pdf/avis/17d25.pdf>.